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7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이종배·김상훈·강대식

조승환 · 최은석 · 엄태영

성일종 · 김성원 · 이종욱

송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특례의 적용을 받아 13세 미만 미성 년자와 장애인같이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신고가 어려운 친족관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 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 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
	계일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